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3가합535672 판결 [계약보증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포스코건설

피고전문건설공제조합

변론 종결2016. 4. 5.

판결 선고2016. 4.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834,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5.부터 2013. 8.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37,834,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A 사이의 하도급계약 및 변경계약 체결

1) 원고는 2010. 4. 17.경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에 도시철도 3호선 1공구(차량기지구간) 건설공사 중 'B 토공사(2)'(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2,378,346,300원에 하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 중 이 사건에 관계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1. 발주자 : 조달청

원도급공사명 : 도시철도 3호선 1공구(차량기지구간) 건설공사 - A80502CA

2. 하도급공사명 : B 토공사(2)

4. 공사기간 : 착공 2010년 4월 17.일 / 준공 2014년 6월 29.일 (51)개월

5. 계약금액 : 2,378,346,300원

8.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 (₩ 237,834,630원)

- 기간 : 계약기간과 동일

[공사계약 일반약관]

제4조(계약보증금) ①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도급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1.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제24조(도급인의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도급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일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32조(보증금의 처리) ① 제24조 각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도급인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특별조건]

2) 도급물량 증감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도급변경 없이 계약금액 조정은 없는 것으로 한다.

3) 현장설명시 제시된 현황도 및 도면을 기준하여 세부 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수량 누락 등으로 발생한 공사비는 "갑(도급인)"에게 요구할 수 없고 발주처의 도급설계 변경시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만 반영할 수 있다.

4) 추가 수량 발생시의 단가는 기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신규 항목의 단가는 "갑"의 도급 설계기준에 "갑"과 "을(수급인)"이 협의하여 조정하며 하도급낙찰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7) "을"은 계약시 또는 공사중 제출하여 승인된 공정표의 공정계획에 미달되어 부득이하게 시행되는 돌관작업이나, 가설재, 자재의 과투입에 따른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공정만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갑"의 지시에 의거 시행되어야 한다.

8) "을"은 공사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갑"의 지시에 따라 야간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공사비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2) 원고는 A과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네 차례에 걸쳐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1차	2011. 3. 8.	대표자변경	C	D	하도급업체 대표이사 변경
2차	2011. 3. 21.	금액변경	2,378,346,000원	3,206,610,000원	발파패턴 변경 및 외곽도로 사면보강 공사 추가에 따른 계약변경
3차	2011. 7. 13.	금액변경	3,206,610,000원	3,328,523,000원	물가변동(ESC) 적용에 따른 하도급계약 변경 시행(1차, 2차)
4차	2011. 9. 26.	계약기간	2010. 4. 17. ~	2010. 4. 17. ~	A의 계약불이행으로

1차	2011. 3. 8.	대표자변경	C	D	하도급업체 대표이사 변경
			2014. 6. 29.	2011. 9. 26.	공사계약 약관 제24조 제2항에 의거 계약해지
금액변경	3,328,523,000원	1,491,046,000원			

나. 피고와 A의 보증계약 체결

피고는 2010. 4. 16. A과 보증금액은 237,834,630원, 보증기간은 2010. 4. 17.부터 2014. 6. 29.까지,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하여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이행의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계약보증서를 발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건 보증계약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보증책임) ①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합니다)은 계약자(이하 '채무자'라고 합니다)가 앞면 기재 계약과 관련하여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이하 '보증채권자'라고 한다)에게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 정한 보증내용과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 및 약관에 따라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② 보증별 보증사고의 내용과 보증금 지급한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계약보증	보증기간 내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도급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주계약 또는 관계법령으로 정한 금액
------	-----------------------------------	---------------------------------

제4조(보증금의 지급) ① 조합은 보증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고 심사를 마친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증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보증금액은 5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8조(면책조항)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보증사고

다. 원고의 A에 대한 해지통고 경위

1) A은 원고에게, 2011. 3. 18.경 이 사건 공사가 아닌 다른 현장에서 작업한 작업자들이 A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가압류를 할 것이 우려된다고 하며 다른 현장의 작업자들에 대한 작업비를 직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1. 3. 25.경에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A 직원들에 대한 노무비의 직불을 요청하였다.

2) 원고는 2011. 7. 4.경 A에게, 체불금 발생이 과다하여 공사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되니 체불금 분석현황, 처리방안 및 향후 공사추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3) 원고는 2011. 7. 12.경 및 2011. 7. 20.경 A에게, 당시까지의 계획 대비 실적공정율이 46%에 불과하다고 하며 체불금 처리방안 및 부진공정 만회방안을 제출하라고 재차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공사계약 일반약관 제24조에 의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4) 한편 A은 2011. 7. 13.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사실상 중단하였다.

5) 원고는 2011. 7. 28.경부터 2011. 9. 8.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A에게, A이 2011. 7. 13. 이후 중단한 공사를 재개하고, 이전에 요구한 공사추진계획 및 부진공정 만회방안을 제출할 것을 거듭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A 측은, 원고가 추가공사에 관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체불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므로 기성금을 조속히 지급하라는 취지로 수차례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공사의 책임감리원은 2011. 9. 8.경 원고 측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점검한 결과 토공, 관로공 및 옹벽공사가 장기간 중지되어 품질훼손 및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조속히 공사를 재개하여 원활한 공사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7) 원고는 2011. 9. 19.경 A에게, 원고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공사가 재개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공사 추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2011. 9. 25.까지 공사를 재개하고 공정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뜻을 통보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1. 9. 29.경 A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을 기재한 공문을 발송하여 위 공문이 그 무렵 A에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0. 20. A의 계약불이행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청구하고, 2012. 7. 9.경 보증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3호증, 을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지된 것은, A이 공사를 중단하여 이 사건 공사 진행에 차질을 발생시켰기 때문으로서, 이는 A의 귀책사유이다.

이 사건 도급계약이 A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어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도급계약 해지의 귀책사유 원고는 A에 대하여 설계 외 추가 공사 대금의 지급을 하지 아니하였고, A이 공사를 중단한 것은 원고의 대금 미지급에 따른 정당한 권리행사였다. 따라서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지된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미지급한 추가공사대금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 A은 2011년 4월까지 원고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도급계약에 포함되지 아니한 추가공사를 실시하였고, 그 대금은 635,886,479원이다.

② 원고는 2011년 6월분 기성 공사대금 104,868,500원 및 7월·8월분 기성 공사대금 99,000,000원을 미지급하였다.

③ 원고는 A이 공사한 물량을 A의 후속 업체가 공사한 물량으로 반영함으로써 296,476,586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④ A은 2011년 5월 이후 흠잡기 연암의 소할 비용, 법면정리 및 소단(사면), 비탈면 고르기, 발파암 크라싱 등의 추가 작업을 실시하였고 그 공사대금은 186,727,710원이며, 여기에 추가공사 제경비 및 기타경비 등을 포함하면 총 192,646,97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손해배상의 예정액 감경 원고와 A 사이의 계약이행보증금의 귀속에 관한 약정은 민법 제398조에서 규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계약이행보증금의 상당 부분이 감액되어야 한다.

3) 상계 항변 이 사건 도급계약이 A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A은 2011년 4월경까지의

추가공사대금 635,886,479원, 2011년 6월분 기성 공사대금 104,868,500원 및 7월·8월분 기성 공사대금 99,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에 위 미지급 공사대금채권들과 원고의 보증금 채권을 서로 상계하면 피고가 지급할 금액이 남지 않는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A에 대한 추가공사대금을 미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A이 2011. 7. 13.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사실상 중단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는 A의 공사중단이 이 사건 도급계약 해지의 원인 된 A의 귀책사유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원고가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A이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한 것이고, 오히려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당시 원고가 A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우선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미지급 사실의 존부에 관하여 본다.

1) 2011년 4월까지의 추가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을 제1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및 감정인 E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11년 4월 이전까지 당초 이 사건 도급계약의 설계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여러 공사를 지시하였고, 그 추가공사의 공사대금은 순공사비를 기준으로 560,316,58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갑 제2호증의 2, 갑 제15호증의 8, 9,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감정인 E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하여 2011. 3. 21.경 발파패턴 변경 및 외곽도로 사면보강 공사 추가에 따른 계약변경을 사유로 하여 계약금액을 당초

2,378,346,000원에서 3,206,610,000원으로 약 8억 원 이상 증액하는 내용의 제2차 변경계약이 체결된 사실, 2011. 2. 25.경의 제8회 기성 검사/지급조서의 누계기성은 28.38%로 반영되어 있었는데, 2011. 4. 25.경의 제9회 기성 검사/지급조서에는 금회기성이 16.07%, 누계기성이 37.12%(제2차 변경계약으로 인하여 누계기성율이 변동되었다)로 각 반영된 사실, 감정인 E는 제9회 검사/지급조서 상의 금회기성 16.07%는 공사범위 및 공정관계상 물리적으로 한꺼번에 급진적인 공사의 진척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2010년 10월경부터 원고가 여러 차례의 작업지시서를 통해 지시한 추가 공사를 설계변경을 통해 뒤늦게 반영하였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1. 4. 29.경 A에 제9회 검사/지급조서 상의 기성대금 515,155,3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2011년 4월경까지의 추가공사대금은 2011. 3. 21.경 제2차 변경계약을 통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기성대금까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2011년 6월 ~ 8월분 기성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2011년 6월분 기성 공사대금이 104,868,500원, 2011년 7월·8월분 기성 공사대금이 99,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기성 공사대금의 지급을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본다. 갑 제25, 2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① 2011년 6월분 기성 공사대금에 대하여, 기 지급한 선급금으로 52,433,7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52,434,800원 중 27,266,000원은 A의 동의를 받아 체불된 노무비로 직접 지급하였으며, 25,168,800원은 A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가 경합하여 그 금액을 공탁한 사실, ② 2011년 7월·8월분 기성 공사대금에 대하여, 기 지급한 선급금으로 23,892,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75,108,000원 가운데 28,535,566원은 A의 동의를 받아 체불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였으며, 46,572,434원은 A의 채권자들의 가압류가 경합하자 그 금액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사대금 채권 역시 그 지급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기시공 물량의 정산 오류로 인한 공사대금 미지급 부분에 관하여 을 제23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 및 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준공내역서 상의 시공물량보다 A과 A의 후속 업체의 각 정산내역서 상의 시공물량을 더한 값이 더 큰 일부 항목들이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사정, 즉 위 각 정산내역서 상의 물량 차이가 나는 공종 가운데에는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 A이 전혀 시공하지 않아 후속 업체가 전적으로 시공한 공종들도 다수 있는 점, 피고가 지적하는 물량의 차이가 원고, A, 후속 업체의 정산 물량 중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르게 정산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각 정산내역서 상의 시공물량의 차이를 모두 A이 공사한 부분이 누락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2011년 5월 이후 추가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① 흠잡기 연암의 소할, 법면정리 및 소단(사면), 비탈면 고르기 : 갑 제1호증의 3, 갑 제24호증의 각 기재 및 감정인 E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의 현장설명회 특약사항에는 견적에 발파암에 대한 소할 비용, 사면절취 시 암검측을 위한 법면청소 및 절취 시 면정리 비용을 포함시키도록 명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도급계약의 특별약관에 '현장설명시 제시된 현황도 및 도면을 기준하여 세부 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수량 누락 등으로 발생한 공사비는 원고에게 요구할 수 없도록' 정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위 각 항목은 원고가 추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추가공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② 발파암 크라싱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발파암 크라싱과 관련하여 추가공사대금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9의 각 기재 및 감정인 E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발파암 크라싱을 위한 비용은 제4차 변경계약을 통해 반영되었고 그 단가는 원고가 미리 지시한 작업지시서에 명시된 단가에 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발파암 크라싱과 관련하여 어떠한 추가 공사대금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계약이행보증금의 지급의무 유무

A이 2011. 7. 13.경부터 사실상 대부분의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원고가 공사재개를 수차례에 걸쳐 촉구하였음에도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이를 이유로 2011. 9. 29. A에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A에 도달한 사실, A은 공사 중단의 이유로 원고의 추가공사대금 미지급을 내세웠으나, A이 주장하는 추가공사대금채권은 그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이미 설계변경에 따라 그 지급이 완료되었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도급계약은 A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와 A 사이의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에 부수한 계약보증 약정에 따라 A이 계약이행보증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위에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이 사건 도급계약이 위와 같이 해지됨으로써 이 사건 보증계약상 보증기간 내에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계약보증금 237,834,6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항변 및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액의 감경 주장에 대하여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손해가 없다든가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 손해배상액예정의 경위 및 거래관행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447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원고와 A은 계약이행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로 정하였는데 이 비율이 통상의 하도급계약관계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고, 위 계약이행보증금의 약정이 A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는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위 계약이행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부당히 과다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상계 항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자동채권으로 주장하는 2011년 4월까지의 추가공사대금 및 2011년 6월부터 8월까지의 기성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상계항변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237,834,6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보증금 지급을 청구받고 그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송부받음으로써 그 보증의무의 발생 및 범위를 인식할 수 있었던 2012. 7. 9.에서 이 사건 보증계약 보증약관이 그 이행기로 규정하는 5일이 경과하여 지체책임이 발생한 2012. 7.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3. 8.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5. 10. 1. 이후에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015. 10. 1. 이후로 연 15%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우종

판사항성욱

판사공민아